

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시간 및 내용(제9조 관련)

구분	교육 시기·주기	교육시간	교육내용
신규교육	등록 후 6개월 이내	18시간 이상	·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·연구실 안전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·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
보수교육	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	12시간 이상	·주요 위험요인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내용에 관한 사항 ·유해인자별 노출도 평가,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·연구실사고 사례, 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 ·기술인력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·그 밖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